

「2026 전속작가 공·사립미술관 전시 개최 지원」사업 공모요강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화랑의 미술작가 발굴 및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을 추진, 2019~2025년 동안 총 483명의 전속작가를 발굴했습니다. 이에 전속작가 풀을 활용하여 그룹전시를 개최할 공·사립미술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모개요

- 공 모 명 : 2026 전속작가 공·사립미술관 전시 개최 지원 사업 공모
- 공고기간 : **2026년 2월 4일(수) ~ 2026년 3월 25일(수) 17:00**
- 지원기간 : 2026년 5 ~ 11월(총 7개월)
- 지원대상 : 2019 ~ 2025년 전속작가 풀을 활용하여 그룹전시를 개최할 공·사립미술관
- 지원규모 : 1개 단체, 1억 지원
- 지원내용 : 전속작가 기획전시 개최비 및 홍보마케팅비 지원

■ 세부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u>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단체 중, 2019 ~ 2025년 전속작가 풀을 활용하여 최소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그룹전시를 개최할 공·사립미술관</u> ① [업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소매업 등 / 업종: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영리·비영리 단체 ②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2025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2025.12.11.) 기준 공·사립미술관으로 등록·분류된 단체 ③ 최근 3년 동안(2023~2025년) 연 1회 이상 전시를(내·외부 등) 개최한 단체
지원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체당 최대 1억 원 지원, 1개 단체 *선정단체 사업수행 불가를 대비하여, 예비단체 선정 예정
이행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 사업기간(5~11월) 내 공사립미술관에서 전속작가 최소 10명을 활용한 그룹전시 기획개최 *2019 ~ 2025년 『전속작가제』 사업을 통해 선정된 전속작가 풀 활용 2019-2025 전속작가제 지원사업 성과사례집 참고(https://bulky.kr/A46rocM) 전속작가 연락처의 경우, 해당하는 갤러리의 대표전화로 신청주체가 직접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2025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서 조사한 공·사립미술관에 한함• (필수) 사업기간 내 30일(설치·철수·휴관을 제외한 순수개최일) 이상 전시개최• (필수) 전시 기획을 위한 총괄기획자 선임• (필수) 전시 연계프로그램 최소 2회 이상 기획(미술관 자체 정기 도슨트 프로그램 제외, 참여작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우대)• (필수) 전시 비평·평론 등 최소 1건 이상 배포• (필수) 전시계약 체결 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의 경우 단체 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진행 가능

구분	내용				
권장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 개최를 위해 참여작가와 사전 협의 권장 *공모 신청 후 서류·면접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되어야 전시 개최가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은 작가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함 **최종 선정이 되더라도, 공모 신청계획(참여작가 명단 및 수, 출품작 수 등) 대비 30% 이상이 변동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공·사립미술관 그룹전시 참여작가 대상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권장 공·사립미술관 전시에 참여하는 전속작가는 한국매세나협회 '1기업 1미술작가 지원사업' 후원 사업 후보 등록 예정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속작가 그룹전시 개최에 필요한 직접 경비 일체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th>지원내용</th></tr> </thead> <tbody> <tr> <td></td><td> 전문가활용비 *전문가 활용비 내 중복 지급 불가 · (참여작가 사례비) 전시 참여비, 재료비, 작품 제작비 등 *신청주체의 소속인력, 전속작가에게는 작가로 참여하더라도 비용 지급 불가 **산출액은 원천세 등 포함 ***재료비 및 작품 제작비 등은 신작 제작 시 지급 가능(신작 제작의 경우, 계획서 내 표시 필수) · (총괄기획자 사례비) 외부 총괄기획자 사례비 *총사업비의 10%까지 지급 가능(초과 편성 불가) *신청주체의 소속인력에게 비용 지급 불가 **산출액은 원천세 등 포함 · (전문가 사례비) 비평·번역·감수·평론·교육 *신청주체의 소속인력에게 비용 지급 불가 **산출액은 원천세 등 포함 소모품비 · (소모품비) 일회용품, 재료비 등 행사에 직접 소모되는 물품비 *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 공공요금및제세 · (보험료) 전시장, 작품 등에 대한 보험료 임차료 · (임차료) 전시에 필요한 물품장비 등에 대한 임차료 *신청주체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물품장비 활용 시 임차료 편성 불가 일반용역비 · (일반용역비) 작품 운송, 설치·철거, 공간 연출, 전시장 지킴이, 전시 홍보(SNS 광고, 도록리플렛포스터 제작 및 인쇄 등) 등 전속작가 그룹전시 개최를 위한 대행 용역비 등 *그 외 전시 개최에 필요한 기타 용역비는 센터의 사전 승인 필요 **국고보조금으로 제작한 도록·리플렛·포스터·엽서 등은 유료 판매 불가 </td></tr> </tbody> </table>	항목	지원내용		전문가활용비 *전문가 활용비 내 중복 지급 불가 · (참여작가 사례비) 전시 참여비, 재료비, 작품 제작비 등 *신청주체의 소속인력, 전속작가에게는 작가로 참여하더라도 비용 지급 불가 **산출액은 원천세 등 포함 ***재료비 및 작품 제작비 등은 신작 제작 시 지급 가능(신작 제작의 경우, 계획서 내 표시 필수) · (총괄기획자 사례비) 외부 총괄기획자 사례비 *총사업비의 10%까지 지급 가능(초과 편성 불가) *신청주체의 소속인력에게 비용 지급 불가 **산출액은 원천세 등 포함 · (전문가 사례비) 비평·번역·감수·평론·교육 *신청주체의 소속인력에게 비용 지급 불가 **산출액은 원천세 등 포함 소모품비 · (소모품비) 일회용품, 재료비 등 행사에 직접 소모되는 물품비 *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 공공요금및제세 · (보험료) 전시장, 작품 등에 대한 보험료 임차료 · (임차료) 전시에 필요한 물품장비 등에 대한 임차료 *신청주체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물품장비 활용 시 임차료 편성 불가 일반용역비 · (일반용역비) 작품 운송, 설치·철거, 공간 연출, 전시장 지킴이, 전시 홍보(SNS 광고, 도록리플렛포스터 제작 및 인쇄 등) 등 전속작가 그룹전시 개최를 위한 대행 용역비 등 *그 외 전시 개최에 필요한 기타 용역비는 센터의 사전 승인 필요 **국고보조금으로 제작한 도록·리플렛·포스터·엽서 등은 유료 판매 불가
항목	지원내용				
	전문가활용비 *전문가 활용비 내 중복 지급 불가 · (참여작가 사례비) 전시 참여비, 재료비, 작품 제작비 등 *신청주체의 소속인력, 전속작가에게는 작가로 참여하더라도 비용 지급 불가 **산출액은 원천세 등 포함 ***재료비 및 작품 제작비 등은 신작 제작 시 지급 가능(신작 제작의 경우, 계획서 내 표시 필수) · (총괄기획자 사례비) 외부 총괄기획자 사례비 *총사업비의 10%까지 지급 가능(초과 편성 불가) *신청주체의 소속인력에게 비용 지급 불가 **산출액은 원천세 등 포함 · (전문가 사례비) 비평·번역·감수·평론·교육 *신청주체의 소속인력에게 비용 지급 불가 **산출액은 원천세 등 포함 소모품비 · (소모품비) 일회용품, 재료비 등 행사에 직접 소모되는 물품비 *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 공공요금및제세 · (보험료) 전시장, 작품 등에 대한 보험료 임차료 · (임차료) 전시에 필요한 물품장비 등에 대한 임차료 *신청주체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물품장비 활용 시 임차료 편성 불가 일반용역비 · (일반용역비) 작품 운송, 설치·철거, 공간 연출, 전시장 지킴이, 전시 홍보(SNS 광고, 도록리플렛포스터 제작 및 인쇄 등) 등 전속작가 그룹전시 개최를 위한 대행 용역비 등 *그 외 전시 개최에 필요한 기타 용역비는 센터의 사전 승인 필요 **국고보조금으로 제작한 도록·리플렛·포스터·엽서 등은 유료 판매 불가				

■ 공모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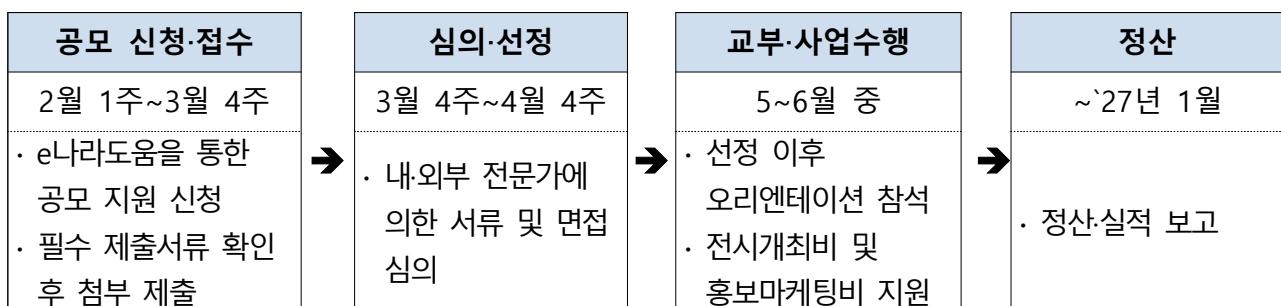
구분		내용		
신청 방법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신청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단 검색엔진 → 2026 전속작가 공사립미술관 전시 개최 지원 입력 → 검색 → 공모사업 클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e나라도움 홈페이지 단체회원 가입 필수, 개인인증서 필요(개인회원 가입 불가) e나라도움 신청 필수, 우편·방문·이메일 접수 불가 본 공모는 예치형 사업으로, 비예치형으로 신청 시 심의대상에서 제외 신청 기간 중 필수 제출서류 중 일부 누락 시 심의대상에서 제외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문의·장애 발생 시 고객센터(1670-9595) 이용 		
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년 2월 4일(수) ~ 2026년 3월 25일(수) 17:00까지 <p>- 공모 마감 이후 수정 불가, 자료 업로드 중 마감 시간이 되면 미제출 처리 - 접수 마감일은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인해 오류 발생이 잦으므로 사전 제출 권장</p>		
제출 서류	서류	필수	① e나라도움 지원신청서	
		필수	② 지원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포함) 1부 - 서명 기입란에 직인·날인 필수, 한글(HWP)파일 제출 필수	
		필수	③ 참여작가 및 출품작 리스트	
		필수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청 전 업태, 종목 확인)	
		필수	⑤ 미술관등록증 사본 1부	
	면접	필수	면접 심의를 위한 PPT 제출 *서류심의 선정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e나라도움 첨부 제출

■ 심의 및 결과발표

구분		내용		
심의	기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 전문 심의위원 5인 내외 구성, 서류 및 면접 심의 진행 	
			세부항목	
		신청주체의 전문성·활동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주체 및 총괄기획자의 활동 이력 등 전문성 최근 3년 이내 전시실적 및 예술현장 기여도 	30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구성한 작가의 예술성, 참신성 사업내용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관람객 개발계획의 충실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매뉴얼 등 관리계획의 구체성 	40
		사업계획의 기대도·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내용의 성과 기대도 및 파급효과 사업의 주제, 작품·작가 등의 시의성 및 기여도 	30
	면접심의	서류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년 3월 4주 ~ 4월 1주(예정) 	
		서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년 4월 2주(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년 4월 3주(예정) <p>*공지된 면접심의 일정은 조정 불가 반드시 대면으로 참석하여야 함(줌Zoom) 등 온라인 면접 불가) **총괄기획자 발표 권장 ***발표자 1명·배석자 1명 참석 가능(단, 배석자는 질의 시간에 한하여 응답 가능)</p>	
		최종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년 4월 4주(예정)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개별 공지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절차



■ 문의 및 주요사항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관련 : 전속작가제 지원 운영 사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선) 070-4401-5879 / (이메일) support@ipso365.com 유선 문의는 평일(월~금) 10:00~17:00 중 가능(점심시간 12:00~13:00) e나라도움 : 고객센터 1670-9595
지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대표, 작가 단체 또는 대표자가 임금 체불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선정단체 대표와 계약 체결 작가가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인 경우 지원 불가(친인척 관계로 밝혀진 자는 보조금 환수) 지원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단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동 사업으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혹은 다른 기관의 지원사업 중복 수혜 불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 동시 수행하는 지원사업이 3개 이하임을 확약할 수 없는 자(단, 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지원사업은 제외) 학교(초, 중, 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 지자체 또는 지자체비로 운영되는 기관 및 단체 기선정된 지원사업에 따른 정산 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센터가 반납 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7조 제4항(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제10조(보조금 교부금 조건) 제1항 제1호 마~아목에 해당하는 단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술단체의 운영자가 예술인들과 고용 및 용역 계약시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불공정계약을 체결(법

	<p>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함)하거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된 계약 내용을 미이행할 경우, 해당 단체는 문체부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지원금 집행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 지급을 위한 신규통장 개설 필수 - 지원금과 자부담 사용 혼용 금지 - 타 통장(대표 명의 포함)으로 지원금 이체 금지 - 임직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거래 금지 - 지원금 현금 인출 금지 - 사업 수행 후, 정산 확정 전 지원금 통장 해지 금지 등 • 지원사업 추진 도중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지침에 따라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에 따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동 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적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한 모든 책임은 지원단체에 있음 • 신청 사업내용 불이행 시 또는 선정 후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지원금은 환수 조치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 임직원 연관(직계존비속 포함) 업체 또는 단체와의 거래는 불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장 보조사업 집행관리(보조금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관련) *제13조(보조금 사용 및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와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사업에 참여하는 대표자 및 실무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제출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및 이수 확인서 제출 • 선정단체 및 작가 계약서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6호) 사용 필수 • 센터가 주관하는 조사 응답 필수(시각예술실태조사((구)미술시장실태조사), 전속계약 유지율, 만족도 조사 등) • 선정자 대상 사업 오리엔테이션 진행 시 실무자 참석 필수
유의 사항	

- 선정단체 대표 본인 및 임직원에게 전속작가 대상 전시 기획, 평론 및 번역/감수 사례비 지급 불가
- 센터에서 정한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 정산/실적보고서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정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
 - 보조금 정산 시 반드시 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사 후 정산보고서 제출
- e나라도움 상 집행·정산·실적보고·정보공시 등 성실 이행
- 보조금은 반드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점검·검증
- 모든 홍보·인쇄물에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로고 삽입